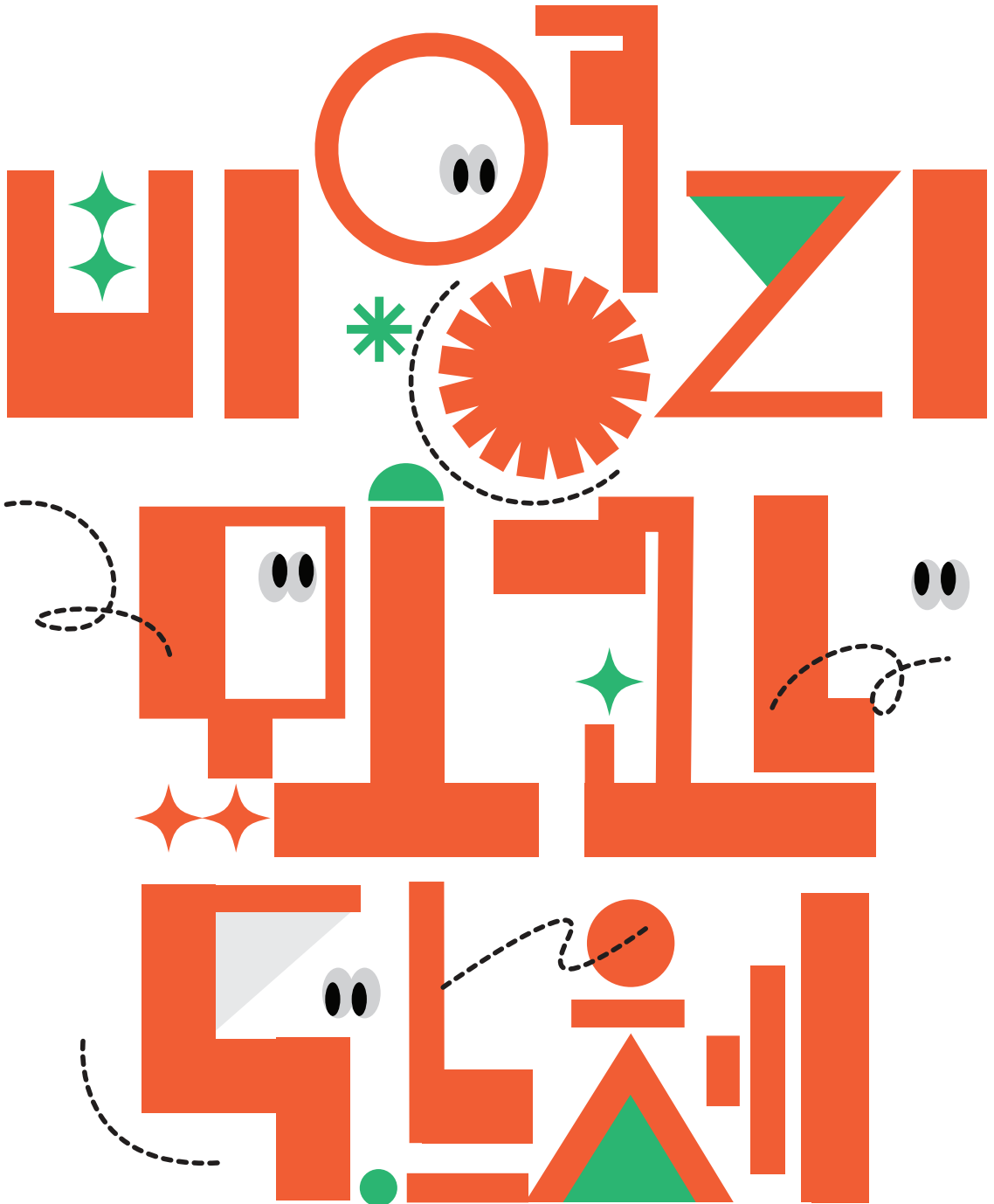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

단체를 만들어야 할 때,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한 활동가를 위한 단체 등록 가이드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



**PART
1**

WHY & WHAT

- 1. 공익활동이 뭔가요? p.8
- 2. 왜 단체 등록을 해야 하나요? p.10
- 3.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p.11

**PART
2**

HOW TO

-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p.14
-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p.20
-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혜택 p.29
- 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p.34

참고자료 p.37

“
**비영리단체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쉽고 의미 있게 공익활동에 다가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특히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가 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일단 수많은 법령들과 시행령, 관련 제도, 유사 사례, 다양한 유권해석 등을 오랜 시간 동안 뒤져 보면서 이런 요건, 저런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등을 따져 보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어 보이고 궁금증은 풀기 어렵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당신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만드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요. 본 매뉴얼은 비영리조직을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형태 중 하나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등록처별 등록요건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주무부처별 맥락이나 상황이 달라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매뉴얼을 통해 등록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뉴얼 마지막에 첨부된 자료들을 참고하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 해봐도 좋겠습니다.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종류를 알고 시작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행정절차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면 뭐가 좋은지 알고 싶다면

이제, 매뉴얼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공익활동에 도전해보세요!

PART 1
WHY & WHAT

이제 막 단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당신에게



공익활동이 뭔가요?

I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2023년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상 ‘공익사업’의 유형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님을 강조하는 개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만, 활동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NPO, NGO에 비해 시민사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는 ‘공익활동(public activities)’에 대한 다양한 정의입니다. 이 외에도 공익활동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된 한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는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흔히 공익활동은 광의의 개념처럼 인식되는데요,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쉽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① 특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공익활동이 상상하는 ‘공적인 것’의 규모와 범위는 다변화되고 있어서 더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도 기존에는 공익활동이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익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① 고경환 외, 2023,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보고서 2023-04, p.19-20

흔히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에는 NPO와 NGO가 있는데요, NPO(Non-

왜 단체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단체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제약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후원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고, 정부나 재단의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자격이 필요할 수 있죠. 또한 등록된 단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 해당 활동을 제삼자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공신력을 획득 받은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은 법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 기능하며,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단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구분	비등록단체	등록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근거법	x	국세기본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록·허가·신고	x	신고	등록	허가	허가	허가
비영리성	영리·비영리 가능	영리·비영리 가능	비영리만 가능	영리·비영리 가능	비영리만 가능	공익목적 사업 비중이 40%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행	x	x	개인	개인·기업	개인·기업	개인·기업

비영리단체를 만들려면, 이제 형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비영리단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등록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따라 나뉩니다. 조직 체계와 규모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임의단체에 해당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이 크다는 한계 역시 있습니다. 이때부터 단체를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등록단체는 비법인단체와 법인단체로 나뉩니다. 비법인단체는 다시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뉩니다. 법인단체에는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사단·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단체는 법인단체보다 요구되는 서류나 지켜야 하는 법률이 덜 엄격해서 만들기도 운영하기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뉴얼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비교적 용이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정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PART 2
HOW TO

비영리민간단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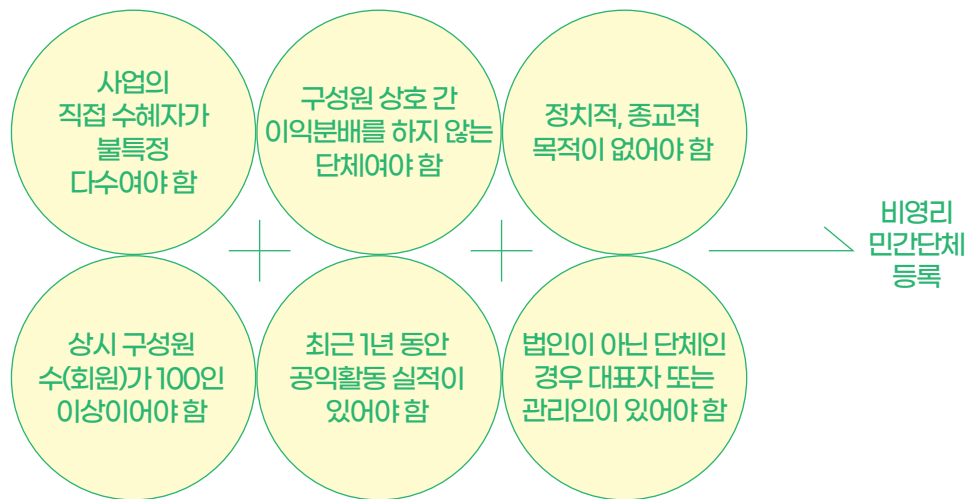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4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등록’과 ‘허가’입니다. 다시 말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제’이고, 사단재단법인은 ‘허가제’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단체 목적사업의 적법성,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사항들을 모두 만족해야 설립 허가가 납니다.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등록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의 핵심은 이 6가지 요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떤 지점을 만족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등록편람과 법제처 해석 등을 기준으로 한 등록요건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봅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특정인이나 소수를 위한 것이면 안 되고 수혜자가 일반 국민 다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수혜자의 지역이나 집단, 직업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원을 모집할 때에도 해당 요건을 이유로 가입 및 탈퇴에 제한을 두는 경우 등록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 내용
- 사업 계획서, 예산·결산서 상의 사업비 집행 내역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여야 함

비영리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단, 수익사업은 단체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이지, 목적 사업의 성격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의 수익은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영리’의 핵심입니다.② 덧붙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거나(친목 단체) 회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직능단체, 조합)에 해당할 때도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② 충청남도공익활동 지원센터, 2019, New설립신공, p.35~36



✔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회칙(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재산 운영 방식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규정의 존재 여부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간 분배한 사례의 존재 여부

[3]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없어야 함

단체 설립 목적이 특정한 개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예컨대,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의 단체는 괜찮지만, 성평등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을 공개적으로 했던 흔적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업 목적의 공익성과 규정에 정치활동이나 종교 활동에 대한 명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회칙(정관) 내의 목적, 사업, 관련 규정에 정치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내용 존재 유무
-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사업비 집행내역에 특정 정당, 정치인, 종교를 지지·지원하는 사업 존재 유무
- 온라인(단체 웹사이트, 블로그 등) 상의 정치나 교리전파 활동 여부

[4]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이상이어야 함

상시 구성원 수가 요건에 있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체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사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100명만 넘어서는 안 되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100명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관 등에서 회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③

③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200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회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회원가입 여부 등을 확인
- 회원 명부 제출 시 생년월일 앞자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란 공익활동 수행능력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을 성년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상 조항은 민·민간의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상시 구성원 문제와는 별개입니다)④

④ 행정안전부,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 p.69



[5]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과 구체적인 실적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단체 명의로의 활동 실적을 확인하므로, 회원 개개인의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홈페이지 자료, 신문·블로그 등 자료의 동일성 여부
- 단체의 계획서, 예·결산서에 포함된 공식적 활동 여부



단체명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의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단체명이 상이한 공익활동 실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명의로 활동한 내용이 곧 실적이며,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등록신청 전에 단체명을 정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 단체의 실적이 새 단체의 실적으로 바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관(회칙) 등에서 정한 총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종전 실적을 등록신청 당시 단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⑤

⑤ 같은 자료, p.71

[6]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함

단체의 각종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표가 선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대표선임 관련 자료(총회 회의록 등), 회칙(정관), 단체 소개서 등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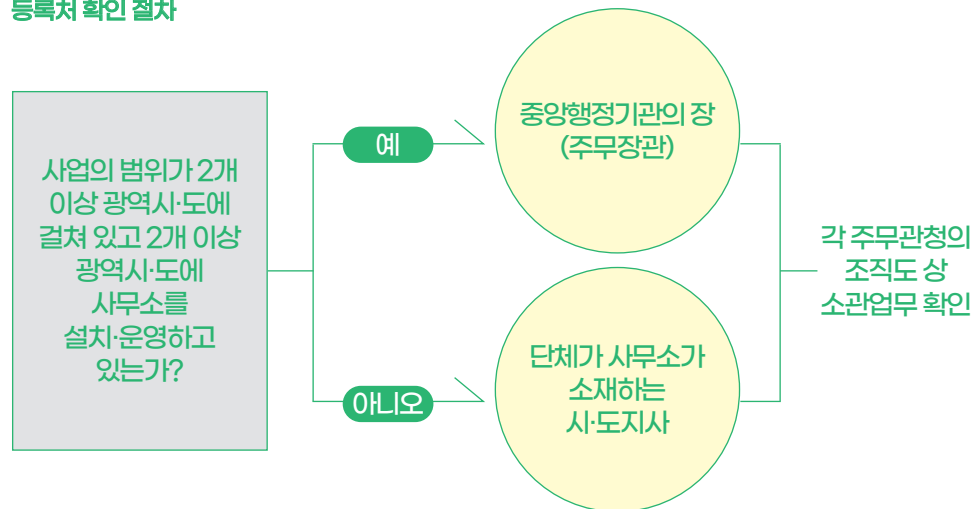


[1] 등록처 확인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어디에 등록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범주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합니다. 반대로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주무 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청의 조직도상의 소관 업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 등록처 확인 절차



Q 본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해당 단체의 지부도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의 지부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의 본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 때는 지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지부가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원할 경우, 지부의 명칭과 대표자의 명의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⁶

⁶ 법제처, 2011.09.01. 참고(지부의 별도 등록 여부의 필요성)

Q 시·도에 등록할 시 회원은 반드시 같은 시·도 내의 주민이어야 하나요?

아니오. 공익활동의 범위와 사무소의 소재지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주소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 역시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는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⁷

⁷ 같은 자료, p.68

[2] 신규 등록신청서 작성

이제 서류를 작성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는 지원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

기본 서류	첨부 서류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회칙(정관) 1부 <input type="checkbox"/> 당해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input type="checkbox"/> 당해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input type="checkbox"/> 회원명부 1부 <input type="checkbox"/> 최근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input type="checkbox"/> 단체 소개서 (조직기구표 포함) <input type="checkbox"/>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 포함) 각 1부

중앙행정기관 및 사도의 각 홈페이지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서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주무관청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서류들은 단체가 사용하는 양식을 제출하면 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작한 <NEW 설립신공 : 단체 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를 참고해 보세요.

이제 해당 서류들을 쓸 때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다.



① 회칙(정관)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면 회칙 또는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Q 회칙과 정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체 내부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내부 조직에 관한 문서를 회칙이라고 하는데요, 규정, 규약, 규칙, 회칙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관은 조직의 형태, 운영방법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종의 자치법규를 일컫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그 위상이 큼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정관을 제출해야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칙이건 정관이건 상관 없습니다.

② 당해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참석자 명부, 총회 개최 사진, 간인을 포함한 2년 치의 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첫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한 안전이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다음 해의 총회까지 해당 안전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총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총회가 아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회칙이나 정관에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조항이 존재해야 합니다.



③

당해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당해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모두 별도의 규정이나 양식이 없으므로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구체성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없으며,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활동 실적은 충족하는데 수지예산서, 결산서 상 수입·지출액이 적어도 무방한가요?

이 역시 따로 규정은 없지만, 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나 계획서에 없는 항목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주무관청에서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에 상식적인 선에서 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④

회원명부 1부

회원명부에는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회원’은 앞서 등록요건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최근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최근 1년간의 주요 활동 내역에 따른 사진 자료나 언론 보도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첨부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각 사무소별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은 그와 별개로 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등록요건입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실적은 본부 중심의 실적이 더 중요하며, 지부의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⑥

단체 소개서

단체 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 유무와 신청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때 2개 이상의 시·도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경우는 각각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⑦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 포함) 각 1부

사무실이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고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소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명의로 계약됐느냐 개인 명의로 계약됐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

출처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문(2023)

구분	단체 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 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시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로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건물 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 건물 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함

Q 공유오피스도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가요?

아니오. 상당히 많은 공유오피스들이 멤버십 기반의 폐쇄형 오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누구나 상시적으로 출입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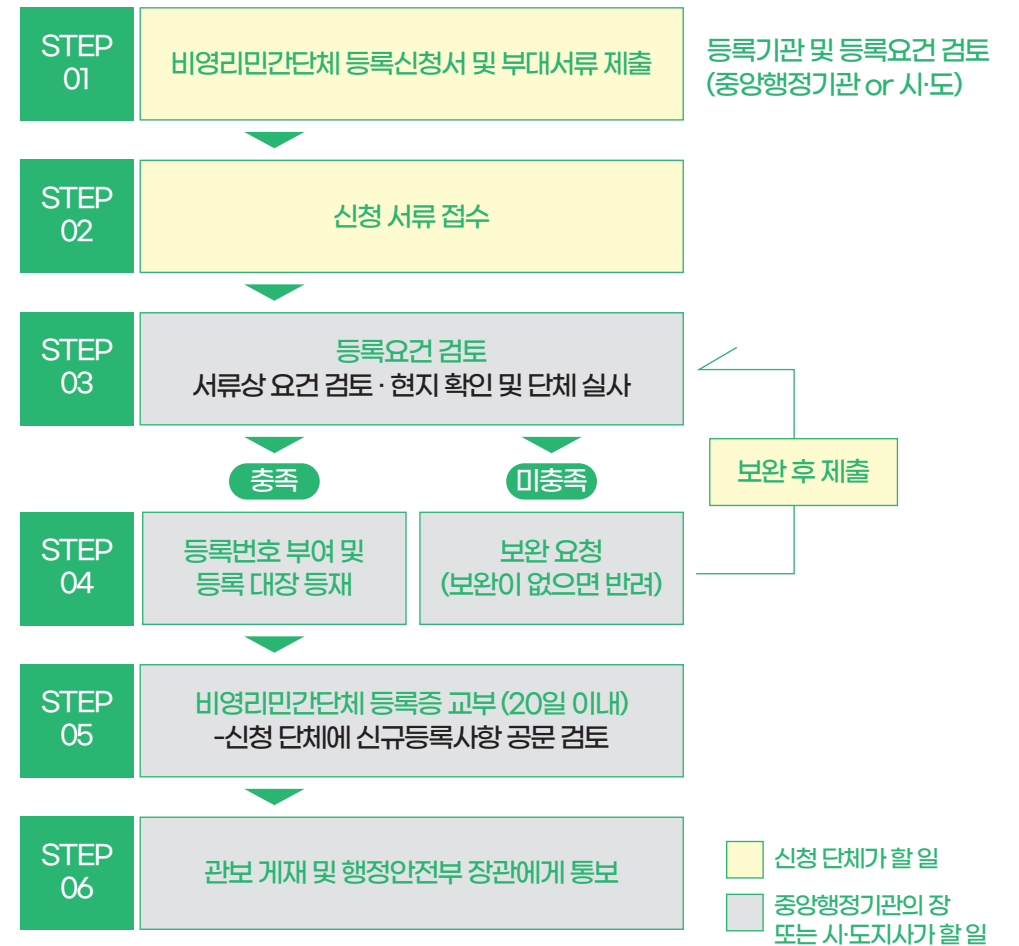
* 다른 단체의 공간을 무상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서류로 증명이 되면 상관 없습니다.

[3] 서류제출 절차

앞서 살펴본 6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검토하고 부대 서류까지 마련이 되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 전에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⑧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이미지 재구성

서류제출 절차 ⑧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혜택

6



TIP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 ① 방문 :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에 제출
- ② 우편 : 등록 부서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거쳐 등기로 송부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 나면, 주무관청은 서류검토와 실사방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다시 등록요건 검토 단계로 돌아갑니다. 등록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이제 단체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신규등록 접수 후 20일 이내(변경등록 접수 후 10일 이내)에 기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해당 단체에 교부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교부되면 곧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 사항을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크게 직·간접적 지원과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있습니다.

[1] 직·간접적 지원

① 직접적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그 외 등록단체는 시·도가 관할하는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때 보조금 교부·집행·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비영리법인이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법상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② 간접적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⑨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시하면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이때 해당되는 우체국은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이거나 우편집중국이어야 합니다. ⑪

- ⑨ 지원법 제10조
- ⑩ 지원법 제11조,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⑪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50호

[2]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단체를 만들고 나면 개인이 낸 기부금을 세액 공제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중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은 추천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단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면 지정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나 아니냐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달리 받을 수 있고 ⑫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⑬ 단,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단체에 낸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점 유념하세요!

- ⑫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 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① 추천신청 요건

공익단체로 추천신청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_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항이 정관·회칙 등에 문구 그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_ 수입(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_ 지정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여 관련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신청한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개설된 통장이 있어야 하며 2018년 한 해 동안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사본을 모두 제출합니다. 이때 후원금을 단체 대표자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넷째_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_ 행정안전부 장관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정관·회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블로그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제작 업체에서 제작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정식 홈페이지만 인정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이제 공익단체 추천신청을 위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추천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첨부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의 첨부자료인 '2023년 공익단체 추천서식'을 참고하세요. 물론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 제출 서류 체크

기본 서류	+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단체 추천신청서 (2022년 개정) 1부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2022년 추가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 단체 통장내역 1부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 1부 □ 단체 회칙(정관) 사본 1부 □ 전년도 단체 명의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 CMS 자료(해당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공익법인 등에서 받은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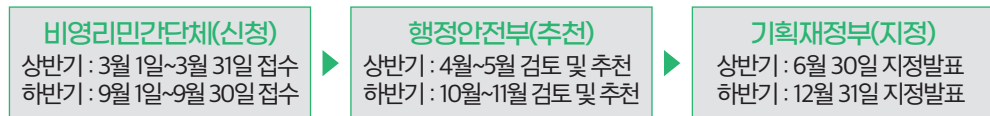
¹⁴ 보조금 결정통지서(보조금 교부기관의 직인, 날인) 또는 보조금·지원금 관련 공문 등.

③

접수기관과 방법

공익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추천하여 기획재정부가 최종 지정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순서



신청할 때는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수신처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택배 접수 불가). 이때 제출서류들은 저용량 PDF파일로 연속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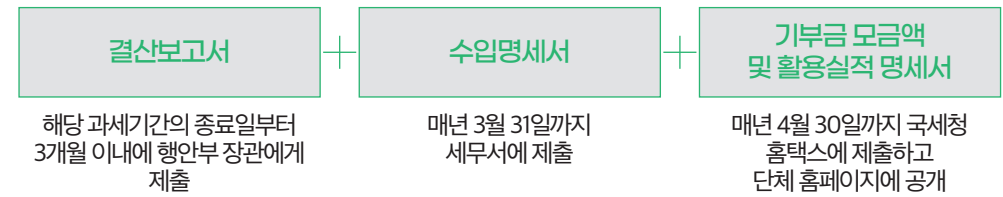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공익단체로 최초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위는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서 재지정이 되는 경우에도 3년 간 유효한데요,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 간 지정효력이 유지됩니다.¹⁵

¹⁵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공익단체를 운영하면 소득세법상의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출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공개 의무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산보고서에 제시된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부금의 총액, 건수,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은 5년 동안 단체가 보관해야 하며 매년 발급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7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어길 수 있는데요, 특히 6가지 등록요건을 위배하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주무관청이 말소를 강행하는 절차를 '직권 말소'라고 부릅니다.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도 해당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사항이 말소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은 주무관청이 회수합니다.

반면, 단체가 직접 신청해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¹⁶로 단체가 말소를 등록한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말소되는 것을 '신청 말소'라고 합니다.

¹⁶ 행정안전부
등록업무편람과
경기도공익활동
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말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재구성

신청 말소 사유

- 단체가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 단체의 명칭, 대표자·관리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등록된 복수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를 신청할 경우

변경 등록하기 위해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간소화된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가지 등록요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하는 단체들보다는 행정적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단체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등록 말소 절차



신청 말소처럼 단체가 의도하여 말소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서류 등을 보완할 기간을 줍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기회(청문인증)가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실수로 어기게 됐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법령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 지원사업 응모 등을 위해서 사무소 주소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절차는 변경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보·공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원이 있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나요?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단체 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말소의 조건에 임원의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자격 박탈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¹⁷

¹⁷ 행정안전부,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 p.69

첨부자료



고경환 외, 2023,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보고서 2023-04
 서울시NPO지원센터, 2014, NPO길라잡이
 서울시NPO지원센터, 2021, NPO설립기초안내서: 비영리단체 만들기의 첫 걸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2019, NPO 법률지원 매뉴얼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예술단체 운영의 바른 길라잡이: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19, New 설립신공: 단체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참고 법안·시행령·고시·법제처 법령해석

민법 제 32조
 법제처 법령해석, 2011.09.01(지부의 별도 등록 여부의 필요성 관련 질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50호,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협동조합기본법

참고 웹사이트

법제처, 200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서울시, 202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17, [기획아카이브14]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가이드 모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 비영리단체의 법적 유형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하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

The image shows a large grid of red lines forming a table structure. The grid consists of 30 columns and 20 rows. The lines are thin and red, creating a uniform grid pattern across the page. The grid is empty, with no text or data entered into any of the cells.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seoulpa 2023-A-001)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 1층

대표전화 02-734-1109

이메일 contact@seoulpa.kr

홈페이지 www.seoulpa.k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